

제 주 지 방 법 원

제 2 형 사 부

판 결

사 건 2020재고합12 가. 국방경비법위반
피 고 인 가.망 오호진 (吳豪璣, 1934. 12. 18.생)
주거 남제주군 안덕면 상창리 507
등록기준지 남제주군 안덕면 상창리 507
재심청구인 피고인 오호진의 동생 000
검 사 000(공판)
변 호 인 변호사 000(피고인들을 위하여)
법무법인(유) 0(피고인들을 위하여)
담당변호사 000
재심대상판결 별지와 같다.
판 결 선 고 2021. 3. 16.

주 문

피고인들은 각 무죄.

이 유

1. 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

가. 피고인들은 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제주4·3사건 때 제주도(濟州島)에 살던 사람이다.

나.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‘수형인명부’에는 그 표지에 ‘단기4281년¹⁾ 12월, 단기4282년 7월(군법회의분)’이라고 쓰여 있고, 내용에는 모두 2,530명(1948년 군법회의 871명, 1949년 군법회의 1,659명)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것으로 각 열마다 피고인의 이름과 당시 나이, 직업, 본적지, 향변 및 관정, 언도일자, 형량 및 수감교도소가 쓰여 있는데,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 내용과 같은 재판이 있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송서류인 공소장이나 공판기록, 판결문 등은 찾을 수 없다.

나. 재심청구인들은 “피고인들이 별지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지만 관련 수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구금된 다음 계속된 구타와 고문 등으로 자백을 강요받았고, 이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, 제422조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.”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고, 이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2021. 2. 17. 재심개시결정을 고지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2. 본안에 관한 판단

알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.

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관련 재심청구 사건부터 이 사건 본안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군법회의에서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.

1) 서기로는 1948년이다.

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(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).

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.

3. 덧붙여

앞서 본 것과 같이 별지에 쓴 판결은 해방 직후 제주4·3사건이라는 극심한 혼란기에 청·장년인 피고인들에게 그들이 반정부활동을 했음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다.

국가로서 완전한 정체성을 찾지 못한 시기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 셀 수 없는 개인이 희생되었는데, 특히 피고인들은 목숨마저 빼앗겼고 그 자녀 등 유족은 오랜 기간 연좌제의 굴레에 갇혀 지내왔다. 지금까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냈는지 ‘과연 국가는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?’ 몇 번을 곱씹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.

다만 오늘 이 판결의 선고로 피고인들과 그 유족에게 덧씌워진 굴레가 벗겨지고, 나아가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들은 저승에서라도 이제 오른쪽 왼쪽을 따지지 않고 낭푼에 담은 지실밥에 마놓지뿐인 밥상이라도 그리운 사람과 마음 편하게 둘러앉아 정을 나누는 날이 되기를,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는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.

재판장 판사 000 _____

 판사 000 _____

판사 000 _____

별지

재심대상 판결

16	단기 4282년(1949년) 6월 1일부 육군본부 보병 제2연대 본부 특별명령 제71호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고등군법회의의 1949. 7. 3. 선고된 판결 중 피고인 오호진에 대한 징역 15년의 유죄판결
----	---